

공유재산 사용료·대부료 감면

재무과 재산관리팀

055-860-3153

코로나19 관련 경기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소정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일정기간 인하하여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

감면대상

-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'직접' 사용하는 공유재산 사용료

감면내용

- 공유재산 사용료를 1천분의 50(5%) -> 1천분의 25(2.5%) 적용
※ 인하금액 최대 20백만원 한도

감면기간

- 2021. 1. 1.부터 2021. 6. 30.까지(6개월)

신청기간

- 코로나19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 해의 12월 31일까지